1. 제정이유

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확보를 통한 행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오염시설의 지하수오염 정화명령체계* 관련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개정 진행중으로 이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 보고서의 작성·제출 및 정화계획의 수립·승인에 관한 세부기준,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* ❶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밀조사(오염평가보고서) → 정화계획 제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❷정화이행기간의 상위입법화(예규→시행규칙)

2. 주요내용

가. 오염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(제정안 제2조)

1)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·방법·내용 등 세부사항은 '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[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]'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·제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

나. 정화계획 수립·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(제정안 제3조)

1) 정화계획의 작성내용·방법, 제출시기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하수법령*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정화계획 수립·승인절차 및 '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[고시 제2025-165호]'에 따른 오염유발시설의 작성내용·방법 등을 준용토록 구체화

* 지하수법 제16조의4·시행령 제26조의4·시행규칙 제36조

2) 승인만료기간(정화 시작 30일 전, 명령 후 6개월내) 명확화

3) 정화계획 승인기관(유역·지방환경청장 또는 시·군·구청장)의 검토 기준·방법(과학원 및 지하수전문기관의 적절성·실효성 검증) 명확화 및 정화계획의 보완·제출 요구 조항 신설 등

다. 정화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(제정안 제4조)

1) 정화이행기간의 산정, 연장 여부 등 결정시 판단기준의 구체화

○ 정화이행기간의 산정 및 연장 여부 결정시 정화계획의 적절성·실효성 여부 검토 및 부적절한 경우 정화계획의 보완·제출 요구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하수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고시 제 호

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9조,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및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법 제16조제2항의 지하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, 작성내용,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‘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[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]‘에 의한 오염유발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·제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, “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”는 “오염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”로, “지하수오염유발시설”은 “오염시설”로 본다.

제3조(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)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라 오염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, 시행령 제26조의4, 시행규칙 제36조 및 「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

정[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]」을 준용한다.

② 「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, “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”는 “오염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”로, “지하수오염유발시설”은 “오염시설”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오염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전 또는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의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하수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화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정화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화계획을 보완·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이행기간 산정 및 연장 등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9조 제7항에 따른 정화명령의 이행기간을 정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화계획을 보완·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「훈령·

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